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9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서미화·윤종군·이재관

오세희 • 박민규 • 김남희

서영석 · 송재봉 · 이성윤

한창민 • 허성무 • 이해식

안태준 · 김재원 · 채현일

윤건영 · 임미애 · 이병진

추미애 • 조계원 • 전종덕

박희승 · 민형배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 중희망재단 내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뿐으로, 매년 급증하는 자살유 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이하이 조에서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등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유통된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센터를 제12조의4에 따른 재단에 둔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정보통신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u>관한 법률」 제2조</u>제1호에 따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 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 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보통신망"이라 한다)-----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 <신 설> 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 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 터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모 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 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

당 정보의 삭제, 차단 등의 협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예방협의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 · 해양경찰관서 및 소 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 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

조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 다.

- ④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유통 된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 해양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에 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센터를 제12조의 4에 따른 재단에 둔다.
-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 ⑦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센터 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과 제6항-----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